

검사인사규정 (제정안)



법무부(검찰과) 02-2110-32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검사인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임용, 전보, 겸임, 파견, 휴직, 정직, 복직, 해임, 면직을 말한다.
2. "고검검사급 검사"란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및 지청 차장검사, 지청장,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부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 법무부 또는 대검찰청에서 기획관·정책관·담당관·대변인·과장으로 근무하는 검사, 그 밖에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고검검사급 검사로 분류하는 것으로 정한 검사를 말한다.
3. "일반검사"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및 제2호에 따른 고검검사급 검사 이외의 검사를 말한다.

제4조(인사의 기본 원칙) 검사에 대한 인사는 성별 등의 차별 없이 검사의 복무평정 등 근무성적, 업무능력, 리더십 및 청렴성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고,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5조(인사원칙의 공개)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비롯한 검사인사 원칙의 주요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사 전에 미리 공지한다.

제2장 임용

제1절 신규임용

제6조(검사의 임명) 검사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7조(신규임용기준) 검사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균형있는 사고능력 등을 참작하고 검사 정·현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신규임용심사)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검사임용 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용심사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① 법무부장관은 사법연수원장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장 등에게 검사 임용 대상자에 대한 검사 임용에 관한 의견서 및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판사, 변호사 등을 검사로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임용대상자의 재직기관이나 근무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검사 임용 대상자의 검사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검사 임용 대상자에게 제3항의 사실조회·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동의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신규임용 검사의 배치) 신규임용 검사는 임용심사 결과 및 각급 검찰청별 인력 운용 현황,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제2절 전보

제11조(전보 원칙) 검사의 전보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인적 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직위의 직무요건, 검찰청별 인력현황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적절히 실시한다.

1. 「검찰청법」 제35조의2에 따른 근무성적 등의 평정 결과
2. 검사의 능력, 성과, 전문성 및 청렴성
3. 희망 근무지
4. 경향교류,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 양성평등, 일·가정의 양립 등 기타 인사상 고려사항

제12조(필수보직기간) ① 고등검찰청 검사를 제외한 고검검사급 검사는 1년, 고등검찰청 검사 및 일반검사는 2년을 각 필수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직의 유무, 직위의 특수성 등 고려할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다른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1.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일반검사가 고검검사급 검사로, 고검검사급 검사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각 임용되는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5. 외부기관에 파견되거나 내부 공모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6. 주요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7. 기타 필요한 경우로서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제13조(일반검사 정기 인사시기) ① 일반검사 정기 인사는 매년 2월 1회 실시한다. 다만, 인사 수요를 감안하여 수시 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정기 인사는 부임일로부터 10일 이상 전 인사 내역을 공지한다. 만약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정을 미리 예고한다.

제3절 파견 및 직무대리

제14조(파견근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파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에 교육훈련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 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파견 필요성 심사) 제14조에 따라 검사를 파견하는 경우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 직무와의 관련성, 협업의 필요성, 「검사정원법」상 검사의 정원 대비 파견 검사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파견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한다.

제16조(파견의 기간)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17조(직무의 대리) 검찰청의 장은 직무 수행상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간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절 심신상의 장애로 인한 퇴직명령

제18조(퇴직명령 사유의 심의 회부)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찰청법」 제39조의2에 따른 퇴직명령을 발령하기에 앞서 퇴직명령 사유의 존부에 관한 심의를 검찰인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검찰인사위원회의 조사·심의) 제18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찰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퇴직명령의 발령 등)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검찰인사위원회가 제19조에 따른 퇴직명령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심의한 검사에 대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제3장 기타

제21조(검사인사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검사인사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